

〈일반논문〉

「唐高宗咸亨3年(672)歸順縣主告身」考釋

조재우*

〈목차〉

- I. 머리말
- II. 「歸順縣主告身」의 판독과 고증
- III. 「歸順縣主告身」의 기초적 검토
- IV. 맺음말

[국문초록]

2021년 중국에서 당대 고신 자료 한 건이 새롭게 확인되었다. 陝西省 西安市 陝西漢唐石刻博物館이 소장하고 있는 「唐高宗咸亨3年(672)歸順縣主告身」이 그것이다. 「귀순현주고신」은 고신의 내용을 석판에 각석하여 무덤에 매납한 소위 '부장용 석각 고신'인데, 그 출토 시기, 출토 지점 및 소장 경위 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으나 최근 陝西省 西安市 인근의 당대 무덤들에서 잇달아 출토·보고되고 있는 다른 부장용 석각 고신들과 마찬가지로 귀순현주의 무덤에서 출토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귀순현주고신」은 그동안 학계에 소개된 수십 건 이상의 당대 고신 자료 중에서도 희소한 외명부 여성의 읍호를 수여하는 '邑號告身'이라는 측면에서 그 사료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귀순현주고신」을 소개하고 관련 내용의 기초적 검토를 진행하여 향후의 고신 연구를 위한 신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동국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 주제어

고신(告身), 음호(邑號), 음호고신(邑號告身), 귀순현주(歸順縣主), 문서행정(文書行政)

I. 머리말

‘告身’이란 散官·職事官·勳官·封爵 등의 관작을 수여할 때 당사자에게 발급된 일종의 ‘임명장’이자 ‘신분증명서’를 가리킨다.¹⁾ 고신은 관작의 품급을 기준으로 冊授·制授(詔授)·勅授·奏授(旨授)·判補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 관리 임용 형식의 차이에 따라 그 서식과 절차 등을 달리하여 발급되었는데,²⁾ 다른 한편으로는 수여되는 관작의 계통에 따라 산관·직사관을 수여하는 ‘官告’, 훈관을 수여하는 ‘勳告’, 봉작을 수여하는 ‘封爵告身’ 등으로 나뉘기도 하였다.

당대의 고신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법제사, 문서행정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연구성과들이 축적되어 있는데,³⁾ 이처럼

1) 조재우, 「당대 군공규정과 수훈절차 - ‘勳告’와 ‘軍功公驗’을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 152, 2020, 85쪽.

2) 자세한 사항은 內藤乾吉, 「唐の三省」(原刊: 『史林』 15-4, 1930), 「敦煌出土の唐騎都尉秦元告身」(原刊: 『東方學報』 3, 1933), 『中國法制史考証』, 有斐閣, 1963; 大庭脩, 「唐告身の古文書學的研究」(原刊: 西域文化研究會 編, 『西域文化研究』 3, 法藏館, 1960), 『唐告身と日本古代の位階制』, 皇學館出版部, 2003 등 참조.

3) 최근의 고신 연구 동향은 徐暢, 「存世唐代告身及其相關研究述略」, 『中國史研究動態』 2012-3; 趙晶, 「論日本中國古文書研究之演進 - 以唐代告身研究爲例」, 『早期中國史研究』 6-1, 2014; 馬俊杰, 「唐代告身研究綜述 - 兼論“告身”淵源」, 『古代法律碑刻研究』 1, 中國政法大學出版社, 2019 등 참조.

다양한 연구 성과들이 축적될 수 있었던 까닭은 일차적으로 전세 및 문헌 저록, 돈황·투르판 출토문서, 그리고 석각 자료 등에서 수십 건 이상의 당대 고신 자료들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⁴⁾ 이러한 자료의 축적은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인데, 특히 최근에는 중국 陝西省 西安市 인근의 당대 무덤들에서 소위 ‘부장용 석각 고신’이 잇달아 출토·보고되면서 자료의 저변이 보다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⁵⁾

그러한 가운데 최근 또 다른 부장용 석각 고신이 확인되었는데, 2012년 5월 陝西省 西安市에서 개관한 민영박물관인 陝西漢唐石刻博物館에서 소장하고 있는 「唐高宗咸亨3年(672)歸順縣主告身」(이하, 「귀순현주고신」)으로 약칭)이 바로 그것이다. 「귀순현주고신」은 2021년 출간된 『陝西漢唐石刻博物館』에 탁본이 수록되면서 최초 소개되었는데,⁶⁾ 2023년 11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陝西漢唐石刻博物館이 충북대학교박물관과 주최한 공동특별전 “中國石刻拓本展 語石千秋”에 《唐歸順縣主石刻詔

4) 徐暢, 「存世唐代告身及其相關研究述略」, 40~42쪽에서는 2012년 기준으로 당시 학계에 알려져 있었던 41건의 당대 고신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5) 당대 고신 자료 가운데 부장용 석각 고신은 1972년 3~4월 陝西省文管會와 昭陵文管會가 陝西省 咸陽市 禮泉縣에 위치한 太宗의 昭陵에 陪葬된 태종의 제12녀 臨川公主 李孟康과 駙馬都尉 周道務 夫婦의 合葬墓를 발굴 조사하는 과정에서 출토된 「唐太宗貞觀15年(641)臨川郡公主告身」과 「唐高宗永徽元年(650)臨川郡長公主告身」이 최초이다(陝西省文管會·昭陵文管所, 「唐臨川公主墓出土的墓志和詔書」, 『文物』 1977-10). 이후 2010년대부터 洛陽師範學院의 趙振華가 陝西省 西安市 인근 당대 무덤들에서 출토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부장용 석각 고신을 보고하고 있는데, 관련 주요 연구로는 趙振華, 「談武周授封武承嗣的詔書和冊書—以新見石刻文書爲中心」, 『湖南科技學院學報』 2013-2; 趙振華, 「談武周苑嘉賓墓志與告身—以新見石刻材料爲中心」, 『唐史論叢』 17, 2014; 趙振華·王迪, 「讀貞觀十八年《滕王李元嬰金州刺史詔》」, 『故宮學刊』 2, 2016; 趙振華, 「記唐代苑大智將軍的告身與墓志(上)」, 『洛陽考古』 2018-2; 趙振華, 「記唐代苑大智將軍的告身與墓志(下)」, 『洛陽考古』 2018-3; 趙振華, 「記唐代外戚韋洽墓誌與贈官詔葬制書」, 『洛陽考古』 2019-1 등이 있다.

6) 秦航 主編, 『陝西漢唐石刻博物館』, 文物出版社, 2021, 196~199쪽.

書》라는 명칭으로 탁본이 전시되면서 한국학계에도 알려지게 되었다.⁷⁾

「귀순현주고신」은 현재까지 확인된 수십 건 이상의 당대 고신 자료 중에서도 희소한 외명부 여성의 읍호를 수여하는 ‘읍호고신’이라는 측면에서 그 사료적 가치가 적지 않은데, 아직 판독·고증 및 관련 내용의 기초적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까닭에 이 글에서는 우선 신출고신 자료로서 「귀순현주고신」을 소개하고 관련 내용의 기초적 검토를 진행하여 향후의 고신 연구를 위한 신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歸順縣主告身」의 판독과 고증

현재 중국 陝西省 西安市 陝西漢唐石刻博物館에 소장된 「唐高宗咸亨3年(672)歸順縣主告身」의 출토 시기, 출토 지점 및 소장 경위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 없다. 다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陝西省 西安市 인근의 당대 무덤들에서 출토·보고된 다수의 부장용 석각 고신들과 마찬가지로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으나 귀순현주의 무덤에서 출토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귀순현주고신」의 형태에 대해서는 2021년 출간된 『陝西漢唐石刻博物館』에 간략한 설명이 있는데, 석회암 재질의 가로 69cm × 세로 34.5cm × 두께 7.8cm의 장방형 석판에 문서 서식을 대체로 준수하

7) 대한민국 충북대학교박물관·중국 심서한당석각박물관 공동특별전, “중국석각탁본전 (中國石刻拓本展) 어석천추(語石千秋)”, 청주 :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 2층 전시실, 2023.11.22.~12.31. 해당 전시회에서 전시된 「귀순현주고신」의 탁본은 충북대학교박물관, 『中國石刻拓本展 - 語石千秋』, 충북대학교박물관, 2023, 86쪽에 수록되어 있다. 필자는 충북대학교 역사교육과 양진성 교수님을 통해 「귀순현주고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되었는데,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해 주신 양진성 교수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여 고신 전체를 음각하였고 사면에 인동덩굴문(忍冬蔓草紋)을 새겼다고 한다.⁸⁾ 현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여 판독 자체에 큰 어려움이 없는 편인데, 이하에서는 「귀순현주고신」의 석각 사진 및 탁본에 의거하여 판독을 제시하고 아울러 관련 내용을 고증하도록 하겠다.

【사진】「唐高宗咸亨3年(672)歸順縣主告身」석각⁹⁾



【탁본】「唐高宗咸亨3年(672)歸順縣主告身」석각 탁본¹⁰⁾



【판독】「唐高宗咸亨3年(672)歸順縣主告身」 판독안

1 門下：邢州刺史·紀王慎第六女，疏祥
 2 宓浦，誕秀梁園，式綜女圖，備循姆
 3 教。拂髮在歲，載表幽嫻之德，結帨
 4 有期，宜申沐賦之典，可封歸順縣
 5 主·食邑一千戶。主者施行。

6 咸亨三年八月廿二日

7 中書令·博陵縣開國子 臣 閻立本¹¹⁾ 宣
 8 太中大夫·行正諫大夫·兼檢校中書侍郎 臣 崔知悌¹²⁾ 奉
 9 朝議郎·行太子文學·中書舍人內供奉 臣 郭正一¹³⁾ 行

- 8) 秦航 主編, 『陝西漢唐石刻博物館』, 196쪽.
- 9) 中國陝西漢唐石刻博物館 웹사이트(<http://www.htmuseum.com>).
- 10) 대한민국 충북대학교박물관·중국 심서한당석각박물관 공동특별전, “중국석각탁본전(中國石刻拓本展) 어석천추(語石千秋)”, 청주 :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 2층 전시실, 2023.11.22.~12.31에 《唐歸順縣主石刻詔書》라는 명칭으로 전시된 탁본(충북대 역사교육과 양진성 교수님 제공).
- 11) 中書令(정3품)·博陵縣開國子(정5품상) 閻立本은 『新唐書』 卷3, 高宗本紀, ‘總章元年(668) 12월 條, 中華書局, 67쪽에 “甲戌, 姜恪檢校左相, 司平太常伯閻立本守右相”(『資治通鑑』 卷201, ‘同年 同月’ 條, 中華書局, 6357쪽 略同)이라 하여 고종 충장 원년(668) 12월 右相(즉, 中書令)에 임명되었다. 함형 원년(670) 百司의 官名을 복구하면서 中書令이 되었으며(단, 『新唐書』 卷3, 高宗本紀, ‘咸亨 2년(671) 是歲’ 條, 70쪽, “是歲, 姜恪爲侍中, 閻立本爲中書令”), 이후 『舊唐書』 卷5, 高宗本紀下, ‘咸亨 4년(673) 10월 條, 98쪽에 의하면 “壬午, 中書令·博陵縣子閻立本卒”(『新唐書』 卷3, 高宗本紀, ‘同年 同月’ 條, 70쪽; 『資治通鑑』 卷202, ‘同年 同月’ 條, 6371쪽 略同)이라 하여, 함형 4년(673) 10월 중서령에 재임하던 중 사망하였다고 한다(『新唐書』 卷61, 宰相世系表, 1644~1646쪽 참조). 아울러 『新唐書』 卷100, 閻立本傳, 3941~3942쪽에는 “總章元年, 自司平太常伯拜右相·博陵縣男. … 咸亨元年, 官復舊名, 改中書令. 卒, 諡曰文貞”(『舊唐書』 卷77, 閻立本傳, 2680쪽 略同)이라 한다. 이하, 中國正史는 中華書局標點本 이용.
- 12) 太中大夫(종4품상)·行正諫大夫(정5품상)·兼檢校中書侍郎(정4품상) 崔知悌는 『新唐書』 卷106, 崔知悌傳, 4040쪽에 “兄知悌, 亦至中書侍郎”이라 한다.

- 10 侍 中 關 14)
- 11 太中大夫·守黃門侍郎·甌山縣開國公 臣 處俊 15)
- 12 通直郎·守給事中 臣 待舉¹⁶⁾ 等 言

- 13) 朝議郎(정6품상)·行太子文學(정6품하)·中書舍人內供奉(정5품상) 郭正一은 『舊唐書』 卷190中, 文苑中, 郭正一傳, 5009~5010쪽에 “郭正一, 定州鼓城人. 貞觀中舉進士. 累轉中書舍人·弘文館學士”(『新唐書』 卷106, 郭正一傳, 4042쪽 略同)라 한다.
- 14) 당시 侍中(정3품)은 關員(정원 2인)이었다. 『新唐書』 卷3, 高宗本紀, ‘咸亨 2년(671) 是歲’ 條, 70쪽에는 “是歲, 姜恪爲侍中, 閻立本爲中書令”이라 하며, 『舊唐書』 卷5, 高宗本紀下, ‘咸亨 3년(672) 2월’ 條, 96쪽에는 “己卯, 侍中·永安郡公姜恪卒於河西鎮守”라 한다(『新唐書』 卷3, 高宗本紀, ‘同年 同月’ 條, 쪽70; 『資治通鑑』 卷202, ‘同年 同月’ 條, 6368쪽 略同). 즉, 고종 함형 3년(672) 2월 侍中 姜恪이 河西鎮守에서 사망한 이후 『新唐書』 卷3, 高宗本紀, ‘上元 2년(675) 8월’ 條, 72쪽에 “張文瓘爲侍中, 郝處俊爲中書令, 劉仁軌爲尚書左僕射, 戴至德爲右僕射”라 하여(『舊唐書』 卷5, 高宗本紀下, ‘同年 同月’ 條, 100~101쪽; 『資治通鑑』 卷202, ‘同年 同月’ 條, 6378쪽 略同) 張文瓘을 시중에 임명하기 전까지 關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新唐書』 卷61, 宰相世系表, 1645~1646쪽 참조).
- 15) 太中大夫(종4품상)·守黃門侍郎(정4품상)·甌山縣開國公(종2품) ‘處俊’은 郝處俊이다. 『舊唐書』 卷84, 郝處俊傳, 2797~2799쪽에 “郝處俊, 安州安陸人也. … 貞觀中, 本州進士舉, 吏部尚書高士廉甚奇之, 解褐授著作佐郎, 襲爵甌山縣公. … 總章二年, 拜東臺侍郎, 尋同東西臺三品. 咸亨初, … 尋而官名復舊, 處俊授黃門侍郎. 三年, 加銀青光祿大夫, 轉中書侍郎”(『新唐書』 卷115, 郝處俊傳, 4215~4216쪽 略同)이라 하여, 고종 총장 2년(669) 東臺侍郎(즉, 黃門侍郎)에 배수되었고 이윽고 같은 해 3월 同東西臺三品이 되었다고 한다(『舊唐書』 卷5, 高宗本紀下, ‘總章 2년(669) 3월’ 條, 92쪽; 『新唐書』 卷3, 高宗本紀, ‘同年 同月’ 條, 67쪽; 『資治通鑑』 卷201, ‘同年 同月’ 條, 6358쪽). 이후 함형 연간(670~674) 초 百司의 官名을 복구하면서 黃門侍郎이 되었는데, 『舊唐書』 卷5, 高宗本紀下, ‘咸亨 3년(672) 10월’ 條, 97쪽에는 “黃門侍郎·甌山縣公·同中書門下三品郝處俊爲中書侍郎, … 並依舊同中書門下三品”이라 하여 함형 3년(672) 10월 증서시랑으로 전임하였다고 한다(『新唐書』 卷61, 宰相世系表, 1644~1645쪽 참조).
- 16) 通直郎(종6품하)·守給事中(정5품상) ‘待舉’는 郭待舉로 추정된다. 『舊唐書』 卷5, 高宗本紀下, ‘永淳 원년(682) 4월’ 條, 109쪽에는 “丁亥, 黃門侍郎郭待舉·兵部侍郎岑長倩·中書侍郎郭正一·吏部侍郎魏玄同並同中書門下同承受進止平章事. 上謂參知政事崔知溫曰, ‘待舉等歷任尚淺, 且令預聞政事, 未可即與卿等同名

- 13 詔書如右, 請奉
- 14 詔付外施行, 謹言.
- 15 咸亨三年八月廿二日
- 16 八月廿二日西時都事_{下直}
- 16-1 制可
- 17 左司郎中下直
- 18 尙書左僕射_關
- 19 尙書右僕射_{關 17)}
- 20 吏部尙書_{關 18)}
- 21 銀青光祿大夫·行吏部侍郎·兼檢校太子右庶子 敬玄¹⁹⁾

稱'自是外司四品已下知政事者, 遂以平章爲名'(『新唐書』卷3, 高宗本紀, '同年同月'條, 77쪽 略同)이라 하여 郭待舉가 고종 영순 원년(682) 4월 黃門侍郎으로서 同中書門下平章事가 되었다고 하는데, 명확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지만 시기적으로 함형 3년(672) 8월 무렵 급사중에 재임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 17) 당시 尙書左·右僕射(중2품)는 關員(정원 각 1인)이었다. 嚴耕望의 고증에 의하면, 상서좌복야는 영휘 2년(651) 8월 임명된 于志寧이 현경 4년(659) 4월 太子太師로 옮긴 후부터 상원 2년(675) 8월 太子左庶子 劉仁軌를 임명할 때까지, 상서우복야는 영휘 4년(653) 9월 임명된 褚遂良이 영휘 6년(655) 9월 潭州都督으로 貶官된 후부터 상원 2년(675) 8월 戶部尙書 戴至德을 임명할 때까지 關員이었다(嚴耕望, 『唐僕尙丞郎表』上, 上海古籍出版社, 2007, 26~30쪽, 320~321쪽, 366~367쪽).
- 18) 당시 吏部尙書(정3품)는 關員(정원 1인)이었다. 嚴耕望은 『大唐新語』卷7, 容恕, 中華書局, 107쪽의 "盧承慶爲吏部尙書, 總章初, 校內外官考. 有一官督運, 遭風失米, 承慶爲之考曰, '...' "라는 기록을 바탕으로 고종 총장 원년(668) 무렵 盧承慶이 司列太常伯(즉, 吏部尙書)에 재임하였고, 이후 상원 2년(675) 8월 吏部侍郎 李敬玄이 吏部尙書로 승진할 때까지 關員이었다고 한다(嚴耕望, 『唐僕尙丞郎表』上, 93~95쪽, 495쪽).
- 19) 銀青光祿大夫(중3품)·行吏部侍郎(정4품상)·兼檢校太子右庶子(정4품상) '敬玄'은 李敬玄이다. 嚴耕望의 고증에 의하면, 고종 총장 2년(669) 2월 右肅機에서 西臺侍郎·兼太子右中護·同東西臺三品·兼檢校司列少常伯(즉, 吏部侍郎)에 임명되었으나 함형 원년(670) 4월 喪免하였다가 같은 해 7월 起復하였고, 함형 3년(672) 10월 吏部侍郎에 정식 제수된 후 상원 2년(675) 8월 吏部尙書로 승진하였다고 한다(嚴耕望, 『唐僕尙丞郎表』上, 93~95쪽, 548쪽).

- 22 通議大夫·守吏部侍郎 行儉²⁰⁾
- 23 銀青光祿大夫·行尚書右丞 圉師²¹⁾
- 24 告歸順縣主, 奉被
- 25 詔書如右, 符到奉行.
- 26 主事 程玄哲
- 27 主爵郎中 欽哲 令史任知敬
- 28 書令史 史玄機²²⁾
- 29 咸亨三年八月廿三日下

III. 「歸順縣主告身」의 기초적 검토

「唐高宗咸亨3年(672)歸順縣主告身」은 고종 함형 3년(672) 8월 23일 邢州刺史·紀王 李愼의 제6녀에게 歸順縣主(食邑一千戶)라는 外命婦²³⁾ 邑號²⁴⁾를 수여하는 ‘邑號告身’²⁵⁾(詔授)이다. 귀순현주에 대해서는

20) 通議大夫(정4품하)·守吏部侍郎(정4품상) ‘行儉’은 裴行儉이다. 嚴耕望의 고증에 의하면, 고종 총장 2년(669) 4월 司文少卿에서 司列少常伯(즉, 吏部侍郎)으로 옮긴 이후부터 조로 원년(679) 11월 禮部尚書로 승진할 때까지 이부시랑에 재임하였다고 한다(嚴耕望, 『唐僕尚丞郎表』 上, 93~96쪽, 548쪽).

21) 銀青光祿大夫(종3품)·行尚書右丞(정4품하) ‘圉師’는 許圉師이다. 嚴耕望의 고증에 의하면, 함형 4년(673)을 전후하여 相州刺史에서 尚書左丞으로 入選하여 상원 2년(675) 8월 戶部尚書로 승진하였다고 하는데(嚴耕望, 『唐僕尚丞郎表』 上, 29~30쪽, 409쪽), ‘귀순현주고신’을 통해 적어도 함형 3년(672) 8월 이전 상서좌승에 임명되었음이 확인된다.

22) 吏部主爵司의 判官인 主爵郎中(종6품상) ‘欽哲’ 및 主典인 主事(종9품상) ‘程玄哲’, 令史(流外官) ‘任知敬’, 書令史(流外官) ‘史玄機’ 등에 대해서는 미상이다.

23) 『通典』 卷34, 職官16, 后妃(及內官命婦附), ‘大唐外命婦之制’ 條, 中華書局, 949쪽에는 “大唐外命婦之制. [原註: 皇帝妃嬪及太子良娣以下爲內命婦, 公主及王

오직 이 고신에 기록된 형주자사·기왕 이신의 제6녀라는 사실 외에 관련 기록이 전혀 없어 그녀의 생애는 물론 휘·자·생몰년조차 정확히 알 수 없다.²⁶⁾ 귀순현주의 부친인 기왕 이신(?~689)은 태종의 제10자이자 귀비 위씨 소생으로 임천공주의 동모제인데,²⁷⁾ 태종 정관 10년(636) 정월 紀

妃以下爲外命婦，今內命婦，具「職員令」中。其制大略皆出於漢魏，不復重敘”라고 하여(仁井田陞, 『唐令拾遺』, 內外命婦職員令(第七), 東京大學出版會, 156쪽), 皇帝의 妃嬪 및 太子의 良娣 이하를 ‘內命婦’, 公主 및 王妃 이하를 ‘外命婦’라 규정하고 있다. 자세한 내·외명부의 제도는 『唐六典』 卷2, 尙書吏部, ‘司封郎中·員外郎’ 條, 中華書局, 38~40쪽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通典』 卷23, 職官5, 尙書下, 吏部尙書, ‘司封郎中·員外郎’ 條, 634쪽에는 “[原註: 掌封爵·皇之枝族及諸親·內外命婦告身及道士·女冠等]”이라 하여 내·외명부에게도 尙書省의 吏部司封司(즉, 吏部主爵司)에서 고신을 발급하였다고 한다.

- 24) 『唐律疏議』 卷2, 名例律12, ‘婦人有官品邑號’ 條, 疏議, 中華書局, 38쪽에는 “婦人有官品者, 依令, 妃及夫人, 郡·縣·鄉君等是也。邑號者, 國·郡·縣·鄉等名號是也。婦人六品以下無邑號, 直有官品, 卽賸是也”라 하고, 아울러 『舊唐書』 卷96, 宋璟傳, 3032~3033쪽에는 “俄又令璟與中書侍郎蘇頌爲皇子制名及封邑, 并公主等邑號。璟等奏曰, ‘… 又公主邑號, 亦選擇三十美名, 皆文不害意, 言足定體。又令臣等別撰一佳名及一美邑號者。…’”라고 하고, 『舊唐書』 卷183, 薛懷義傳, 4742쪽에는 “則天將革命, 誅殺宗屬諸王, 唯千金公主以巧媚善進奉獨存, 抗疏請以則天爲母, 因得曲加恩寵, 改邑號爲延安大長公主, 加實封, 賜姓武氏”라 한다. 이를 통해 ‘邑號’란 國·郡·縣·鄉 등의 名號를 취하여 大長公主·長公主·公主·郡主·縣主 이하 妃·國夫人·郡夫人·郡君·縣君·鄉君 등 외명부 5품 이상의 여성에게 수여한 일종의 여성 봉작을 지칭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대의 읍호에 대해서는 최진열, 「唐代 여성 爵號(邑號)의 性格 - 邑號와 본적지·郡望의 關係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63, 2008, 188~193쪽 등 참조.
- 25) 『唐會要』 卷26, 命婦朝皇后(應儀制附), 上海古籍出版社, 573쪽에는 “景雲四年六月勅, ‘文武官五品已上, 母妻未受邑號告身者, 不在朝會之限’”이라 하여 ‘邑號告身’이라는 명칭이 확인된다.
- 26) 「귀순현주고신」이 부장용 석각 고신인 만큼 귀순현주의 무덤에서 그 생애를 기록한 묘지 역시 동반 매납되었을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까지 귀순현주묘지의 출토 사실은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
- 27) 『舊唐書』 卷76, 太宗諸子傳, 2647쪽, “太宗十四子, … 韋妃生紀王慎”(『新唐書』 卷80, 太宗諸子傳, 3536쪽 略同); 『新唐書』 卷83, 諸帝公主傳, 3645~3646쪽, “太宗二十一女, … 臨川公主, 韋貴妃所生.”

왕에 봉해졌고²⁸⁾ 고종 총장 2년(669) 邢州刺史에 제수되었다.²⁹⁾ 이후 기왕 이신은 무측천 수공 4년(688) 당시 '臨朝稱制'하며 황제 즉위를 준비하던 황태후 무측천에 맞서 越王 李貞 및 琅琊郡王 李沖 부자 등이 주동한 당 종실 일족의 거병³⁰⁾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루되어 이듬해인 영창 원년(689) 7월 嶺表의 巴州로 유배되던 도중 蒲州에서 사망하였는데,³¹⁾ 이 사건으로 기왕 이신의 장자 東平郡王 李續을 비롯한 장성한 아들 대부분이 주살되고 그 가족은 嶺南으로 遷徙되었다.³²⁾ 이러

28) 『舊唐書』卷76, 太宗諸子·紀王慎傳, 2664쪽, “紀王慎, 太宗第十子也. 貞觀五年, 封申王. … 十年, 改封紀王, 賜實封八百戶”(『新唐書』卷80, 太宗諸子·紀王慎傳, 3577쪽 略同); 『舊唐書』卷3, 太宗本紀下, ‘貞觀 10년(636) 정월 條, 45~46쪽(『新唐書』卷2, 太宗本紀, ‘同年 同月’ 條, 36쪽; 『資治通鑑』卷194, ‘同年 同月’ 條, 6118쪽 略同).

29) 『唐大詔令集』卷37, 諸王·冊親王官, 「冊紀王慎邢州刺史文」, 商務印書館, 164~165쪽, “維總章二年歲次己巳□月庚寅朔十二日辛丑, 皇帝若曰, ‘… 維爾使持節澤州諸軍事·澤州刺史·上柱國·紀王慎, … 是用命爾爲使持節邢州諸軍事·邢州刺史·上柱國, 王如故. … ’”(『全唐文』卷14, 「冊紀王慎邢州刺史文」(高宗 4), 中華書局, 173쪽 略同).

30) 무측천 수공 4년(688) 당 종실 일족의 거병에 대해서는 黃約瑟, 「試論垂拱四年李唐宗室反武之役」, 『黃約瑟隋唐史論集』, 中華書局, 1997 등 참조.

31) 『舊唐書』卷76, 太宗諸子·紀王慎傳, 2665쪽, “慎少好學, 長於文史, 皇族中與越王貞齊名, 時人號爲紀·越. 初, 貞將起事, 慎不肯同謀. 及貞敗, 慎亦下獄. 臨刑放免, 改姓虺氏, 仍載以檻車, 配流嶺表, 道至蒲州而卒”(『新唐書』卷80, 太宗諸子·紀王慎傳, 3577~3578쪽 略同); 『舊唐書』卷6, 武則天本紀, ‘永昌 원년(689) 7월 條, 120쪽, “紀王慎被誣告謀反, 載以檻車, 流于巴州, 改姓虺氏”(『新唐書』卷4, 武則天本紀, ‘同年 同月’ 條, 88쪽; 『資治通鑑』卷204, ‘同年 同月’ 條, 6458쪽 略同).

32) 『舊唐書』卷76, 太宗諸子·紀王慎傳, 2665쪽, “慎長子和州刺史東平王續最知名, 早卒. 次子沂州刺史義陽王琮·楚國公觀·遂州別駕襄郡公秀·廣化郡公欽·建平郡公欽等五人, 垂拱中並遇害, 家屬徙嶺南.” 단, 『資治通鑑』卷204, ‘永昌 원년(689) 7월 條, 6458쪽에는 “丁巳, 檻車徙巴州, 更姓虺氏, 行及蒲州而卒. [胡三省註: 紀王慎徙巴州, 蓋令取道相·衛, 自河北路西上, 不得至東都, 歷絳至蒲而卒.] 八男徐州刺史東平王續等, 相繼被誅. [『考異』曰: 『舊』傳云, ‘慎長子和州刺史東平王續, 最知名, 早卒.’ 今從『實錄』.] 家徙嶺南”이라 하여 다소 차이가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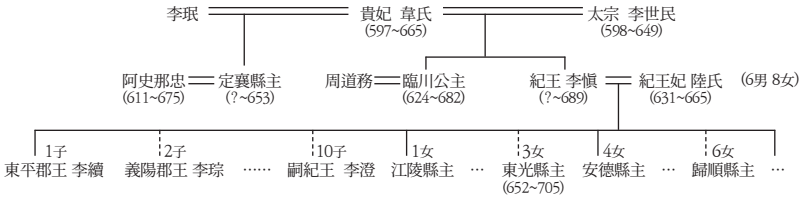
한 기왕 이신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신당서』 종실세계표에 東平郡王 李續, 義陽郡王 李琮을 비롯하여 嗣紀王 李澄까지 10명의 아들들만 확인될 뿐³³⁾ 딸들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다만 기왕 이신의 정비 紀王妃 陸氏(631~665)의 神道碑, 즉 「紀國先妃陸氏碑」에 “비의 소생으로 東平郡王 (李)續 등 6남, 江陵縣主 등 8녀가 있다”³⁴⁾ 고 기록된 것으로 볼 때 장녀 江陵縣主를 비롯하여 최소 8녀 이상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구체적으로 관련 기록들에 의하면, 기왕 이신에게는 장녀 江陵縣主 외에도 제3녀 東光縣主(652~705),³⁵⁾ 제4녀 安德縣主³⁶⁾ 등이 있었던 것이 확인되는데,³⁷⁾ 「귀순현주고신」을 통해 기왕의 제6녀 歸順縣主가 추가로

데, 『資治通鑑』을 따른다. 한편, 『舊唐書』 卷76, 太宗諸子·紀王慎傳, 2665쪽에는 “中興初, 追復官爵, 令以禮改葬. 封慎少子鐵誠爲嗣紀王, 後改名澄”이라 하여, 증중 복위 이후 기왕의 봉작은 살아남은 기왕 이신의 少子 李鐵誠(이후 李澄으로 개명)에게 이어졌다고 한다.

- 33) 『新唐書』 卷70下, 宗室世系表下, ‘太宗·紀王房’ 條, 2104~2120쪽.
- 34) 『全唐文』 卷992, 「紀國先妃陸氏碑」(厥名 33), 10275~10278쪽, “妃諱字, 河南洛陽人也. … 年十有三, 出歸於紀國. … 貞觀十七年, 有詔冊命爲紀王妃. … 妃所生東平郡王續等六男·江陵縣主等八女. … 以麟德二年六月廿六日, 薨於澤州之館舍, 春秋三十有五.”
- 35) 『全唐文』 卷319, 「唐故東光縣主神道碑銘」(李華 6), 3232~3233쪽, “先祖宗室之望曰紀王, 太宗第十子也. 維帝族母師曰東光縣主, 紀王第三女也. … 年十六[一作十八], 受封邑. 王擇聞喜公以妻之. … 言未畢而薨, 春秋五十有四, 時神龍元年二月二十二日”; 氣賀澤 3688. 「大唐故東光縣主墓誌銘」, “縣主諱, 字, 隴西狄道人, 唐高祖■■皇帝之 …, … 皇帝之孫, 太子少保·紀王之第三女, 嬪於正義大夫·■太子洗馬 …, … (中略) … 神龍元年二月廿三日, 薨於蒲州■■縣, 春秋五十四”(『續集』, 408~409쪽). 이하, 唐代墓誌資料는 氣賀澤保規 編, 『新編唐代墓誌所在綜合目錄』, 明治大學東アジア石刻文物研究所, 2017 참조.
- 36) 氣賀澤 2575. 「大唐故陸府君(景澄)之銘」, “大唐紀國王第四女安德縣主婿梓州郿縣令陸君墓誌銘並序. 君諱景澄, 字安道, 河南洛陽人也. … 粵以垂拱二年正月十八日卒於郿縣之公舍, 春秋卅有五. … 尊大人前通事舍人价, 則紀國之妃弟也”(『碑林續編』, 187~189쪽).
- 37) 이외에도 氣賀澤 7639. 「有唐東都安國寺故上座韋和上墓誌銘」에는 “上座俗姓韋氏, 法諱圓淨, 京兆南人也. … 年十四, 辭家入道, 依止本寺李上座爲受業和上. 和

확인되었다(귀순현주의 가계는 【 표 1 】 참조).

【 표 1 】 귀순현주 가계도³⁸⁾



전술하였듯이, 「귀순현주고신」은 기왕의 제6녀에게 ‘귀순’이라는 특정 지명을 취하여³⁹⁾ ‘歸順縣主(食邑一千戶)’라는 읍호를 수여한 고신인데, 여기서 ‘현주’란 원칙적으로 친왕의 딸에게 수여된 외명부 읍호였다.⁴⁰⁾

上即己王之女, 玄宗諸姑. … 至興元元年十二月十四日棄南閭之穢境, 歸西方之淨域, 神捨此而生彼, 壽奄然而有終. 享年六十, ?? 柩於律院之東堂, 爲後人會臨之所”(『彙編』下, 1836~1837쪽)라 하여 현종 개원 26년(738) 무렵 東都 安國寺의 上座가 己王의 女이자 玄宗의 諸姑인 李和上이라고 하는데, 丁斯明, 『新唐書·宗室世系表』集校, 蘭州大學 碩士學位論文, 2023, 251쪽에서는 ‘岑仲勉의 高宗(岑仲勉, 『金石論叢』, 上海古籍出版社, 1981, 151쪽)을 바탕으로 이때의 ‘己王’이 곧 紀王 李愼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 38) 『新唐書』卷70下, 宗室世系表下, ‘太宗·紀王房’條, 2104~2120쪽. 아울러 丁斯明, 『新唐書·宗室世系表』集校, 248~251쪽 참조. 참고로 기왕의 자녀들 가운데 기왕비 육씨 소생(6남 8녀)이 확실한 것은 장남 東平郡王 李續, 장녀 江陵縣主 뿐이고, 다른 자녀들의 생모는 미상이다(단, 기왕의 제4녀 安德縣主의 경우 남편 陸景澄이 기왕비 육씨의 친정 조카라는 측면에서 기왕비 육씨 소생일 가능성이 있다).
- 39) 秦航 主編, 『陝西漢唐石刻博物館』, 196쪽에서는 귀순현주의 읍호로 사용된 ‘歸順’이라는 지명이 劍南道 戎州都督府(오늘날의 四川省 宜賓市 부근) 관하의 歸順縣이라 하였다. 그러나 『舊唐書』卷41, 地理志4, ‘戎州’條, 1693쪽; 『新唐書』卷42, 地理志6, ‘戎州·南溪郡’條, 1086쪽에 의하면, 戎州都督府 관하 歸順縣은 무척천 성력 2년(699) 郁郿縣에서 分置하여 生獠를 거처시켰다고 하므로 귀순현주의 읍호와는 무관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귀순현주의 읍호로 사용된 ‘歸順’이라는 지명의 연원은 미상이다.
- 40) 귀순현주의 부친 紀王 李愼의 異父同母姊 定襄縣主 李氏(?~653)처럼 친왕의

이러한 외명부 읍호의 제도에 대해서는 『唐六典』 卷2, 尙書吏部, ‘司封郎中·員外郎’ 條 등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外命婦의 제도(는 다음과 같다.) (1) 황제의 고모는 大長公主, 황제의 자매는 長公主, 황제의 딸은 公主에 봉하며, 모두 正一品에 비한다. 황태자의 딸은 郡主에 봉하며, 從一品에 비한다. (친)왕의 딸은 縣主에 봉하며, 正二品⁴¹⁾에 비한다. (2) 왕의 모·처는 妃로 삼는다. (문무관) 1품 및 국공의 모·처는 國夫人, 3품 이상의 모·처는 郡夫人, 4품 및 훈관 2품으로서 봉작이 있는 자의 모·처는 郡君, 5품 및 훈관 3품으로서 봉작이 있는 자의 모·처는 縣君으로 삼는다. 散官은 모두 職事와 같다. 훈관 4품으로서 봉작이 있는 자의 모·처는 鄉君으로 삼는다.⁴²⁾ 그 모친의 邑號에는 모두 ‘太’

딸이 아닌 데에도 불구하고 현주의 외명부 읍호가 수여되는 소위 ‘特封縣主’의 사례도 종종 확인된다. 정양현주는 태종의 후비이자 기왕 이신의 생모인 貴妃 韋氏(597~665)가 태종에게 재가하기 전(隋) 戶部尙書 李子雄의 아들로서 부친과 더불어 煬帝 大業 9년(613) 楊玄感의 반란에 참여하였다가 주살된 첫 남편 李珣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인데, 모친의 재가로 인하여 태종의 의붓딸이 되면서 정양현주라는 외명부 읍호가 수여되어 突厥 阿史那氏 일족의 阿史那忠(611~675)에게 降嫁되었다(氣賀澤 1495. 『唐太宗文皇帝故貴妃·紀國太妃之銘』, 『續集』 162~163쪽; 氣賀澤 1990. 『大唐故右驍衛大將軍·贈荊州大都督·上柱國·薛國公阿史那貞公(忠)墓誌之銘』, 『彙編』 上, 601~603쪽 참조). 이외에도 고종 - 무척천의 딸 太平公主가 첫 남편 薛紹 사이에서 낳은 차녀 萬泉縣主 薛氏(687~710)의 사례(氣賀澤 4006. 『大唐故萬泉縣主薛氏墓誌銘』, 『彙編』 上, 1120~1121쪽, “縣主姓薛氏, 河東汾陰人, 鎮國太平長公主之第二女也. … 則天后嘉其嬪則, 錫以崇號, 封萬泉縣主”)라든가 숙종 장황후의 모친 義章縣主 竇氏의 사례(『舊唐書』 卷52, 肅宗張皇后傳, 2185쪽, “肅宗即位, 冊爲淑妃. 贈父太僕卿去逸左僕射, 母竇氏封義章縣主. … 乾元元年四月, 冊爲皇后”) 등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特封縣主’는 모두 특수한 사정에 의거하여 황제의 은총으로 수여된 예외적인 사례에 해당하고 원칙적으로 현주라는 외명부 읍호는 친왕의 딸에게만 수여되었다.

41) 『新唐書』 卷46, 百官志1, 尙書省·吏部, ‘司封郎中’ 條, 1188쪽에는 “親王女爲縣主, 從二品”이라 하는데, 『당육전』, 『당회요』, 『구당서』 등을 따른다.

42) 『唐會要』 卷26, 命婦朝皇后(應儀制附), 睿宗 景雲 4년 6월 勅, 574쪽, “帶職者若

자를 덧붙인다. 각각 그 남편 및 아들의 품급에 비하고, 만약 (남편·아들) 두 사람이 관·작을 가진 경우 모두 높은 쪽을 따른다. (3) 內命婦 1품의 모는 正四品郡君, 2품의 모는 從四品郡君, 3품·4품의 모는 모두 正五品郡(縣?)君⁴³⁾으로 삼는다. (4) 무릇 婦人이 남편·아들로 인하지 않고 별도로 邑號가 더해진 경우 夫人은 ‘某品夫人’이라 하고 郡君은 ‘某品郡君’이 되며 縣君·鄉君 역시 그러하다. 무릇 庶子로서 5품 이상의 관직·봉작이 있을 경우 모두 嫡母를 봉하고 적모가 없으면 바로 生母를 봉한다.⁴⁴⁾

이 규정에 의하면, 외명부 읍호의 수여 대상은 크게 네 범주로 구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황제의 혈육인 종실녀의 읍호로, 황제의 고모·자매·딸에게는 각각 大長公主·長公主·公主(이상, 정1품), 황태자의 딸에게는 郡主(중1품), 친왕의 딸에게는 縣主(정2품)가 수여되었다. 「귀순현주고신」은 바로 이러한 종실녀에게 발급된 읍호고신의 실례인데, 이외에도 귀순현주의 고모인 임천공주의 고신, 즉 「唐太宗貞觀15年(641)臨川郡

勳官四品有封, 母妻爲鄉君.”

- 43) 『舊唐書』 卷43, 職官志2, 尙書都省, ‘吏部尙書·司封郎中’ 條, 1821쪽; 『新唐書』 卷46, 百官志1, 尙書省·吏部, ‘司封郎中’ 條, 1188쪽; 『唐會要』 卷26, 命婦朝皇后(應儀制附), 睿宗 景雲 4년 6월 勅, 574쪽에는 內命婦 三品·四品の 母는 ‘正五品縣君’이라고 한다.
- 44) 『唐六典』 卷2, 尙書吏部, ‘司封郎中·員外郎’ 條, 38~39쪽. 아울러 『舊唐書』 卷43, 職官志2, 尙書都省, ‘吏部尙書·司封郎中’ 條, 1821쪽; 『新唐書』 卷46, 百官志1, 尙書省·吏部, ‘司封郎中’ 條, 1188쪽; 『通典』 卷34, 職官16, 后妃(及內宮命婦附), ‘大唐外命婦之制’ 條, 949~950쪽; 『唐會要』 卷26, 命婦朝皇后(應儀制附), 睿宗 景雲 4년 6월 勅, 574~575쪽 참조. 한편, 『唐六典』 卷2, 尙書吏部, ‘司封郎中·員外郎’ 條, 39~40쪽에는 “凡親王孺人二人, 視正五品, 媵十人, 視正六品. 嗣王·郡王及一品媵十人, 視從六品, 二品媵八人, 視正七品, 三品及國公媵六人, 視從七品, 四品媵四人, 視正八品, 五品媵三人, 視從八品. 降此已往皆爲妾”이라 하여, 읍호가 수여되지 않는 그 밖의 외명부로 親王의 孺人·媵, 嗣王·郡王·國公 및 五品已上의 媵 등을 들고 있다.

公主告身」(詔授), 「唐高宗永徽元年(650)臨川郡長公主告身」(詔授)이 있다.⁴⁵⁾ 둘째, 왕(親王·嗣王·郡王)⁴⁶⁾·국공⁴⁷⁾의 봉작자 및 산관·직사관 5품 이상, 그리고 봉작을 가진 훈관 4품 이상 내외관의 모·처에게 수여된 읍호로, 妃·國夫人·郡夫人·郡君·縣君·鄉君 등이 그것이다. 내외관의 모·처에게 수여된 읍호는 기본적으로 남편·아들의 관작에 따라 수여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 품급 역시 남편·아들의 품급에 비하였는데, 남편·아들 두 사람 모두 관·작을 가진 경우나 한 사람이 관·작을 가진 경우 모두 ‘高蔭’에 따라 수여되었고,⁴⁸⁾ 읍호고신이 아직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아들이 사망하였을 경우 발급되지 않았다.⁴⁹⁾ 특히, 모친의 읍호에

45) 臨川公主(李孟康, 624~682)는 태종의 12번째 딸(위귀비 소생)이자 고종의 11번째 손위 누이로, 전자는 ‘皇女’의 신분이었던 태종 정관 15년(641) 정월 20일 臨川郡公主(食邑三千戶)에 봉하는 고신이고, 후자는 ‘皇姊’의 신분이었던 고종 영휘 원년(650) 정월 24일 臨川郡長公主로 진봉하는 고신이다(陝西省文管會·昭陵文管會, 「唐臨川公主墓出土的墓志和詔書」, 52~53쪽).

46) 『通典』卷34, 職官16, 后妃(及內官命婦附), ‘大唐外命婦之制’條, 949쪽, “諸王母妻及(爲?)妃 [原註: 嗣王·郡王母·妻亦同]”(『唐會要』卷26, 命婦朝皇后(應儀制附), 睿宗 景雲 4년 6월 勅, 574쪽 略同); 『新唐書』卷46, 百官志1, 尙書省·吏部, ‘司封郎中’條, 1188쪽, “王·嗣王·郡王之母·妻爲妃” 등에 의하면, 외명부 妃는 親王뿐만 아니라 嗣王·郡王之 母·妻에게도 수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通典』卷34, 職官16, 后妃(及內官命婦附), ‘大唐外命婦之制’條, 950쪽에는 “開元八年五月勅, 準令王妻爲妃, 文武官及國公妻爲國夫人. 母加太字. 一人有官及爵者, 聽從高敍. 但王者名器, 殊恩或頒異姓, 妻各從夫受秩, 甲令更無別條. 率循舊章, 須依往例. 自今已後, 郡·嗣王及異姓王母·妻, 並宜準令爲妃”(『唐會要』卷47, 封建雜錄下, 976쪽; 『全唐文』卷35, 「準令王妻爲妃勅」(元宗 16), 385쪽 略同)라 하여, 현종 개원 8년(720) 5월 18일 칙서를 내려 郡王, 嗣王 및 異姓王 등의 모·처에게도 「內外命婦職員令」에 의거하여 妃로 삼도록 하였다고 한다.

47) 『通典』卷34, 職官16, 后妃(及內官命婦附), ‘大唐外命婦之制’條, 949쪽, “文武官一品及國公, [原註: 其非始封者, 帶三品以上, 亦同]”(『唐會要』卷26, 命婦朝皇后(應儀制附), 睿宗 景雲 4년 6월 勅, 574쪽 略同).

48) 『通典』卷34, 職官16, 后妃(及內官命婦附), ‘大唐外命婦之制’條, 950쪽, “[原註: 若夫子兩有官及爵, 或一人有官及爵者, 皆從高蔭]”(『唐會要』卷26, 命婦朝皇后(應儀制附), 睿宗 景雲 4년 6월 勅, 574쪽 略同).

는 처의 읍호와 달리 ‘某國太妃’, ‘某國太夫人’, ‘某某郡太夫人’ 등과 같이 ‘太’ 자를 덧붙였으며, 서자의 경우 적모가 생존하였다면 적모에게, 적모가 사망하였다면 생모에게 읍호가 수여되었다.⁵⁰⁾ 이러한 내외관의 모·처에게 발급된 읍호고신의 실례로는 「唐肅宗上元2年(761)容城縣太君和氏告身」(奏授),⁵¹⁾ 「唐肅宗寶應元年(762)贈蘭陵郡太夫人殷氏告身」(制授)⁵²⁾ 이 있다. 셋째, 내명부 4품 이상의 모에게 수여된 읍호로, 「內外命婦職員令」의 “皇帝의 妃嬪 및 皇太子의 良娣 이하를 內命婦로 삼는다”⁵³⁾ 는 규정에서 보듯이 내명부란 황후 및 황태자비를 제외한 황제 및 황태자의 후궁을 가리킨다. 현종 개원 연간(713~741) 이전의 내명부는 황제의 경우 4

49) 『唐會要』卷26, 命婦朝皇后(應儀制附), 睿宗 景雲 4년 6월 勅, 575쪽, “若未給授, 而夫·子薨卒, 不在給限.”

50) 『通典』卷34, 職官16, 后妃(及內官命婦附), ‘大唐外命婦之制’條, 950쪽, “諸庶子有五品以上官封者, 若嫡母在, 所生之母不得爲太妃以下. [原註: 無者聽之. 其承重者不合(給?)]” 『唐會要』卷26, 命婦朝皇后(應儀制附), 睿宗 景雲 4년 6월 勅, 575쪽 略同).

51) 「唐肅宗上元2年(761)容城縣太君和氏告身」(현재 소재 미상)은 1902~1914년 3 차례에 걸쳐 吐魯番을 비롯한 新疆 일대를 탐험한 大谷探險隊의 일원이었던 橘瑞超가 舊藏하고 있었던 소위 ‘橘文書’의 하나로, 숙종 상원 2년(761) 9월 15일 容城縣太君 和氏에게 발급된 邑號告身(奏授)의 사본이다. 현재 고신의 후반부만 남아 있어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으나, 읍호에 ‘太’ 자가 덧붙여져 있는 것으로 볼 때 산관·직사관 5품 혹은 훈관 3품(上護軍·護軍)으로 봉작을 가진 아들로 인하여 수여된 고신이다. 자세한 사항은 大庭脩, 「唐告身の古文書學的研究」, 172~175쪽 참조.

52) 「唐肅宗寶應元年(762)贈蘭陵郡太夫人殷氏告身」은 南宋 嘉定 8년(1215) 留元剛이 顏真卿(709~785)의 遺墨으로 편찬한 법첩인 『忠義堂帖』에 수록된 안진경 일가의 고신 5건 가운데 하나로(中國法帖全集編集委員會編, 『中國法帖全集』9, 湖北美術出版社, 2002, 231~237쪽), 숙종 보응 원년(762) 11월 1일 안진경의 모친 殷氏(?~738)를 蘭陵郡太夫人에 추증하는 贈邑號告身(制授)이다. 자세한 사항은 中村裕一, 「寶應元年(七六二)顏允南母·殷氏贈邑號告身」, 『唐代官文書研究』, 中文出版社, 1991, 234~242쪽 참조.

53) 『通典』卷34, 職官16, 后妃(及內官命婦附), ‘大唐外命婦之制’條, 949쪽(仁井田陞, 『唐令拾遺』, 內外命婦職員令(第七), 156쪽).

夫人(정1품) - 9嬪(정2품) - 9婕妤(정3품) - 9美人(정4품) - 9才人(정5품) - 27寶林(정6품) - 27御女(정7품) - 27采女(정8품) 등 121員, 황태자의 경우 2良娣(정3품) - 6良媛(정4품) - 10承徽(정5품) - 16昭訓(정7품) - 24奉義(정9품) 등 58員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⁵⁴⁾ 이러한 내명부 구성에 따라 내명부 1품인 4부인(즉, 貴妃·淑妃·德妃·賢妃)의 모에게는 正四品郡君, 내명부 2품인 9빈(즉, 昭儀·昭容·昭媛·修儀·修容·修媛·充儀·充容·充媛)의 모에게는 從四品郡君, 내명부 3품인 9첩여, 2양제 및 내명부 4품인 9미인, 6양원의 모에게는 正五品縣君의 읍호가 수여되었다.⁵⁵⁾ 넷째, 남편·아들로 인하지 않고 특별한 사유에 의거하여 여성 개인에게 별도로 수여되는 읍호로, 이 경우 남편·아들로 인하여 수여되는 읍호와 달리 ‘某品夫人’, ‘某品郡君’, ‘某品縣君’, ‘某品鄉君’ 등으로 칭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사례로는 무척천 만세통천 원년(696) 契丹의 李盡忠이 반란을 일으켜 山東 일대를 점거하며 平州를 침략하자 平州刺史 鄒保英의 처 奚氏

54) 『唐六典』卷2, 尚書吏部, ‘司封郎中·員外郎’條, 38쪽; 『唐六典』卷12, 內官·宮官·內寺省, ‘內官’條, 347~348쪽; 『舊唐書』卷44, 職官志3, 內官, 1866~1867쪽; 『舊唐書』卷51, 后妃傳上, 2161~2162쪽; 『新唐書』卷47, 百官志2, 內官, 1225쪽; 『唐會要』卷3, 內職, 36~37쪽; 『通典』卷34, 職官16, 后妃(及內官命婦附), ‘大唐外命婦之制’條, 947쪽. 현종 개원 연간(713~741) 이전의 내명부 구성은 고종 융삭 2년(662) 2讚德(정1품, 4부인을 대체) - 4宣儀(정2품, 9빈을 대체) - 5承闈(정4품, 9미인을 대체) - 5承旨(정5품, 9재인을 대체) - 6衛儻(정6품, 27보림을 대체) - 8供奉(정7품, 27어녀를 대체) - 20侍櫛(정8품, 27재녀를 대체) - 30侍巾(정9품) 등 80員으로 잠시 축소되었다가 함형 2년(671) 다시 이전대로 환원되었는데, 그 후 현종 개원 연간 “今上以爲后妃四星, 其一后也, 其有后位, 復立四妃, 則實其所法象之意焉”을 이유로 3夫人(惠妃·麗妃·華妃, 정1품) - 6儀(淑儀·德儀·賢儀·順儀·婉儀·芳儀, 정2품) - 4美人(정3품) - 7才人(정4품) 등으로 개정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貴妃를 두었다. 자세한 사항은 김호, 「唐代 皇室女性의 生活과 地位」, 『동양사학연구』 97, 2006, 6~12쪽 참조.

55) 단, 『唐會要』卷26, 命婦朝皇后(應儀制附), 睿宗 景雲 4년 6월 勅, 574쪽에는 “及內命婦四品已上, 母並加邑號. 一品·二品, 母爲正四品郡君. 三品·四品, 母並爲正五品縣君. [原註: 東宮命婦, 亦准此. 其會朝依命婦制]”라 하여, 다소 차이가 있다.

가 가동 및 성내 여자들을 이끌고 수성하는 데에 이바지하자 ‘誠節夫人’의 음호가 수여된 사례 등⁵⁶⁾이 확인된다⁵⁷⁾(외명부 음호의 제도는 【 표 2 】 참조).⁵⁸⁾

56) 『通典』卷34, 職官16, 后妃(及內官命婦附), ‘大唐外命婦之制’條, 950쪽, “[原註: 武太后時, 契丹寇平州, 平州刺史鄒保英妻奚氏率城內女子助守, 賊遂退, 封爲誠節夫人]”(아울러 『舊唐書』卷193, 列女·鄒保英妻奚氏傳, 5145~5146쪽; 『新唐書』卷205, 列女·楊烈婦傳, 5826쪽 참조). 이외에도 『통전』에는 함형 원년(670) 무척천의 모에게 魯國太夫人을 추증한 것 역시 이러한 사례의 하나로 들고 있는데, 다만 ‘誠節夫人’이나 ‘魯國太夫人’ 등의 음호는 『당옥진』 등에서 남편·아들로 인하지 않고 특별한 사유에 의거하여 여성 개인에게 음호를 수여할 경우 ‘某品夫人’ 등이라 한다는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다.

57) 『唐律疏議』卷2, 名例律12, ‘婦人有官品邑號’條, 疏議, 38쪽에는 “諸婦人有官品及邑號, 犯罪者, 各依其品, 從議·請·減·贖·當·免之律, 不得蔭親屬. 【疏】議曰: 婦人有官品者, 依令, 妃及夫人, 郡·縣·鄉君等是也. 邑號者, 國·郡·縣·鄉等名號是也. 婦人六品以下無邑號, 直有官品, 卽媵是也. 依禮, 凡婦人, 從其夫之爵位. 注云, 生禮死事, 以夫爲尊卑. 故犯罪應議·請·減·贖者, 各依其夫品, 從議·請·減·贖之法. 若犯除·免·官當者, 亦準男夫之例. 故云各從議·請·減·贖·當·免之律. 婦人品命既因夫·子而授, 故不得蔭親屬”이라 하여, 음호의 수여에 수반하는 형벌상의 특권을 규정하는 한편, 婦人の 品命은 남편·아들로 인하여 수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親屬을 蔭庇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通典』卷34, 職官16, 后妃(及內官命婦附), ‘大唐外命婦之制’條, 950쪽에는 “中宗時, 韋皇后表請諸婦人不因夫子而加邑號, 許同見任職事, 聽子孫用蔭, 門施棨戟. 制從之”(『舊唐書』卷7, 中宗本紀, ‘景龍3年(709)7월’條, 147쪽; 『新唐書』卷4, 中宗本紀, ‘同年 同月’條, 111쪽 略同. 단, 『唐會要』卷81, 用廢, 1774쪽에는 경룡2년(708)7월7일의 일이라고 한다)라고 하여, 종종 경룡 연간 위황후의 表請으로 남편·아들로 인하지 않고 다른 사유로 음호가 수여되는 경우 현임 직사관과 동일하게 子孫의 蔭補 및 門戟의 특권이 허용되었다고 한다(최진열, 「唐代 여성 爵號(邑號)의 性格」, 191~193쪽).

58) 한편, 음호는 외명부에게 수여되는 경우 외에도 『新唐書』卷5, 玄宗本紀, ‘開元11년(723)정월’條, 130쪽의 “癸巳, 赦太原府, 給復一年, 下戶三年, 元從家五年. 版授侍老八十以上上縣令, 婦人縣君. 九十以上上州長史, 婦人郡君. 百歲以上上州刺史, 婦人郡夫人” 등에서 보듯이 赦·德音 등에 수반한 恩典으로 백성 중 노령의 부인들에게 版授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최진열, 「唐代 여성 爵號(邑號)의 性格」, 193~197쪽 참조.

【 표 2 】 외명부 읍호의 제도⁵⁹⁾

	외명부 읍호	품급	대상자
1	大長公主, 長公主, 公主	正一品	· 皇帝의 姑, 皇帝의 姊·妹, 皇帝의 女
2	郡主	從一品	· 皇太子의 女
3	縣主	正二品	· 親王의 女
4	妃	夫·子之品 (高廢)	· 王(親王·嗣王·郡王)의 母·妻
5	國夫人	〃	· 文武官(散官·職事官) 一品의 母·妻 · 國公의 母·妻
6	郡夫人	〃	· 文武官(散官·職事官) 二品·三品の 母·妻
7	郡君	〃	· 文武官(散官·職事官) 四品の 母·妻 · 勳官二品有封者의 母·妻
		正四品 從四品	· 內命婦 一品(皇帝 4夫人)의 母 · 內命婦 二品(皇帝 9嬪)의 母
8	縣君	〃	· 文武官(散官·職事官) 五品の 母·妻 · 勳官三品有封者의 母·妻
		正五品	· 內命婦 三品(皇帝 9婕妤, 皇太子 2良娣)의 母 · 四品(皇帝 9美人, 皇太子 6良媛)의 母
9	鄉君	〃	· 勳官四品有封者의 母·妻
* 남편·아들로 인하지 않고 별도로 읍호를 수여하는 경우			

59) 『唐六典』 卷2, 尙書吏部, ‘司封郎中·員外郎’ 條, 38~39쪽; 『舊唐書』 卷43, 職官志2, 尙書都省, ‘吏部尙書·司封郎中’ 條, 1821쪽; 『新唐書』 卷46, 百官志1, 尙書省·吏部, ‘司封郎中’ 條, 1188쪽; 『通典』 卷34, 職官16, 后妃(及內官命婦附), ‘大唐外命婦之制’ 條, 949~950쪽; 『唐會要』 卷26, 命婦朝皇后(應儀制附), 睿宗 景雲 4년 6월 勅, 574~575쪽 등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한편, 『唐會要』 卷81, 階, 憲宗 元和 13년(818) 6월 制書, 1773쪽에는 “其外命婦封, 內外官母·妻, 各視其夫及子散官品令, 不得約職事官品. 文武五品階爲縣君, 四品階爲郡君, 三品已上階爲郡夫人, 即止. 其國夫人須待特恩, 不在敘例. 如至郡夫人, 又有制書賜封, 即改爲郡夫人, 受新恩履歷而已”라 하여, 남편·아들로 인한 외명부 읍호의 수여 기준이 현종 원화 13년(818) 6월 이후 기존의 산관·직사관 5품 이상 및 봉작을 가진 훈관 4품 이상(輕車都尉 이상) 내외관의 모·처에서 산관 5품 이상 내외관의 모·처로만 국한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외명부 읍호의 수여 기준이 산관으로만 한정된 까

이러한 읍호고신의 발급 절차는 명확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데, 다만 앞서 제시한 외명부 읍호 수여 대상의 네 범주 가운데 (2) 남편·아들로 인하여 그 모·처에게 읍호를 수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唐會要』 卷26, 命婦朝皇后(應儀制附), 睿宗 景雲 4년 6월의 칙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무릇 남편·아들로 인해 妃 이하를 수여해야 할 경우 見任官은 本司, 본사가 없으면 本貫에서 所司에 進牒하고 (所司에서) 申奏하여 告身을 발급한다. 단, 申奏할 경우 所司가 모두 抄奏한다. 만약 아직 (고신을) 給授하지 않았는데 남편·아들이 薨卒하였다면 給限에 두지 않는다.⁶⁰⁾

이 칙서는 일찍부터 읍호고신의 발급 절차와 관련하여 주목되었던 내용인데, 이 칙서에 의하면 남편·아들로 인하여 그 모·처에게 妃 이하의 외명부 읍호를 수여해야 할 경우 현임관은 ‘本司’(즉, 本官의 官司), 非현임관은 ‘本貫’(즉, 都督府·州)에서 읍호 수여를 관장하는 ‘所司’(즉, 尚書省의 吏部主爵司)로 牒을 올리면 이부주작사에서 황제에게 ‘申奏’하여 읍호고신을 발급하였다고 한다. 여기서 ‘申奏’란 “所司가 모두 抄奏한다”고 하듯이 담당관사인 이부주작사에서 ‘奏抄’⁶¹⁾를 작성하여 황제에게 상주하

답에 대해서는 당 후기 使職의 성행으로 인한 소위 ‘職事官의 階官化’ 현상(張國剛, 『唐代階官與職事官의 階官化』, 『唐代政治制度研究論集』, 文津出版社, 1995)이 그 배경으로 지적된다(최진열, 『唐代 여성 爵號(邑號)의 性格』, 188~190쪽).

60) 『唐會要』 卷26, 命婦朝皇后(應儀制附), 573~575쪽, “景雲四年六月勅, ‘…’ 其月勅, ‘… 諸因夫·子應授妃已下者, 見任官從本司, 無本司從本貫, 進牒所司, 申奏給告身. 其申奏者, 所司總爲抄奏. 若未給授, 而夫·子薨卒, 不在給限. …”

61) ‘奏抄’란 6종의 皇帝上呈文書(혹은 奏事文書) 가운데 하나로, 『唐六典』 卷8, 門下省, ‘侍中’ 條, 241~242쪽에는 “凡下之通於上, 其制有六, 一曰奏抄, [原註: 謂祭祀, 支度國用, 授六品已下官, 斷流已下罪及除·免·官當者, 並爲奏抄.] 二曰奏彈, 三曰露布, 四曰議, 五曰表, 六曰狀, 皆審署申覆而施行焉”이라 한다. 「공식령」 주

는 것을 가리킨다. 주지하듯이, 담당관사에서 상주한 주초는 문하성의 심의(즉, ‘駁正’)⁶²⁾ 이후 황제의 재가(즉, 御畫聞)를 거치면 제칙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갖는 ‘御畫奏抄’로 성립하는데,⁶³⁾ 이 어획주초가 다시 상서성에 접수되어 담당관사로 회부되면 담당관사가 이를 시행하였다. 이렇듯 주초를 시행하여 작성·발급되는 고신이 바로 奏授告身(旨授告身)인데,⁶⁴⁾ 요컨대 이 칙서에서는 남편·아들로 인하여 그 모·처에게 외명부 읍호를 수여해야 할 경우 주수고신을 발급하도록 규정한 것⁶⁵⁾ 으로 그 사례가 바로 전술한 「唐肅宗上元2年(761)容城縣太君和氏告身」⁶⁶⁾ 이다.

초식에 대해서는 仁井田陞, 『唐令拾遺』, 公式令(第二十一), 546~548쪽; 池田溫, 『唐令拾遺補』, 公式令(第二十一), 東京大學出版會, 1997, 707~711쪽, 1242~1243쪽 참조.

- 62) 『唐六典』 卷8, 門下省, ‘給事中’ 條, 244쪽, “凡百司奏抄, 侍中審定, 則先讀而署之, 以駁正違失.”
- 63) 『唐律疏議』 卷9, 職制律22, ‘被制書施行有違’ 條, 疏議, 197~198쪽, “問曰: 條云, ‘被制書施行而違者徒二年’, 未知勅及奏抄得罪同否? 答曰: 上條稽緩制書, 注云, ‘謄制·勅, 符·移之類皆是’ 卽明制·勅之義, 輕重不殊. 其奏抄御親畫聞, 制則承旨宣用, 御畫不輕承旨, 理與制書義同”; 『唐律疏議』 卷19, 賊盜律26, ‘盜制書·官文書’ 條, 疏議, 350~351쪽, “盜制書者徒二年, 勅及奏抄亦同. 勅旨無御畫, 奏抄卽有御畫, 不可以御畫奏抄輕於勅旨, 各與盜制書罪同.”
- 64) 「공식령」 주수고신식에 대해서는 仁井田陞, 『唐令拾遺』, 公式令(第二十一), 563~568쪽; 池田溫, 『唐令拾遺補』, 公式令(第二十一), 東京大學出版會, 1997, 715쪽, 1267~1269쪽 참조.
- 65) 다만, 『唐會要』 卷26, 命婦朝皇后(應儀制附), 睿宗 景雲 4년 6월 勅, 575쪽에는 “... 諸蕃人三品已上母·妻, 應加邑號者, 並授”라고 하는데, 이 규정에 상응하는 내용이 『新唐書』 卷46, 百官志1, 尙書省·吏部, ‘司封郎中’ 條, 1188쪽에는 “諸蕃三品以上母·妻授封以制”라고 한다. 즉, 남편·아들로 인하여 외명부 읍호를 수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諸蕃人 3품 이상의 경우에는 奏授告身이 아닌 制授告身(詔授告身)이 발급되었던 것이다.
- 66) 大庭脩, 「唐告身の古文書學的研究」, 172~173쪽.

- 前缺 -

- 1 吏 部 尚 書
- 2 正義大夫·吏部侍郎上柱國 孚
- 3 尚 書 左 丞 萬
- 4 告 容 城 縣 太 君 和 氏, 計
- 5 奏 被
- 6 旨 如 右, 符 到 奉 行.
- 7 主 事 滄
- 8 員 外 郎 持 令 史 政 昇
- 9 書 令 史 李
- 10 上 元 二 年 九 月 十 五 日 下

다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남편·아들로 인하여 그 모·처에게
 읍호를 수여할 때 주수고신이 아닌 제수고신을 발급한 경우 역시 적지 않
 게 확인된다.⁶⁷⁾ 일례로 『文苑英華』卷419, 中書制誥40, 命婦, 國夫人
 및 郡夫人에 수록된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⁶⁸⁾

(1) 「封姚崇妻鄭國夫人制」(蘇頌)

67) 전술한 남편·아들로 인하여 외명부 읍호를 수여한 또 다른 실례인 「唐肅宗寶應元
 年(762)贈蘭陵郡太夫人殷氏告身」(中國法帖全集編集委員會 編, 『中國法帖全
 集』9, 231~237쪽)의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68) 『文苑英華』卷419, 中書制誥40, 命婦·國夫人, 「封姚崇妻鄭國夫人制」(蘇頌),
 「封牛仙客妻王氏幽國夫人制」(孫逖), 中華書局, 2119쪽; 『文苑英華』卷419, 中
 書制誥40, 命婦·郡夫人, 「進封賀蘭琬母楊氏弘農郡夫人制」(蘇頌), 2121~2122
 쪽. 이외에도 『文苑英華』卷419, 中書制誥40, 命婦에는 '發日勅'을 통해 외명부 읍
 호를 수여한 사례 역시 다수 확인되는데, 中村裕一가 지적하듯이 그 대부분은 올령
 의 규정이 준수되지 않고 직수고신이 확대되었던 당 후기의 사례에 해당한다(中村
 裕一, 「寶應元年(七六二)顏允南母·殷氏贈邑號告身」, 240쪽).

黃門：兵部尙書·兼紫微令·監修國史·上柱國·梁國公姚崇妻滎陽郡夫人鄭氏，… 可封鄭國夫人. 主者施行.

(2) 「封牛仙客妻王氏幽國夫人制」(孫邈)

門下：… 銀青光祿大夫·守工部尙書·同中書門下三品·持節朔州節度使·度支(支度?)·營田·鹽池·押諸蕃部落副大使·上柱國·幽國公·知門下省事牛仙客妻琅琊郡夫人王氏，… 可封幽國夫人. 主者施行.

(3) 「進封賀蘭琬母楊氏弘農郡夫人制」(蘇頌)

門下：太僕卿員外置同正員賀蘭琬母楊氏，…… 可封弘農郡夫人. 主者施行.

(1), (2)는 현종 개원 연간(713~741) 姚崇의 처 滎陽郡夫人 鄭氏 및 牛仙客의 처 琅琊郡夫人 王氏에게 각각 鄭國夫人, 幽國夫人의 음호를 수여한 것이고 (3)은 賀蘭琬의 모 楊氏에게 弘農郡夫人의 음호를 수여한 것인데, 모두 “黃門(門下)：…… 主者施行”이라 하기 때문에 제서를 통해 음호를 수여한 제수고신의 사례에 해당한다. 이는 예종 경운 4년 6월의 칙서에서 남편·아들로 인하여 외명부 음호를 수여할 경우 주수고신을 발급한다는 규정과 배치되는 사례인데, 어떠한 기준에 의거하여 음호고신이 각각 제수고신 혹은 주수고신이 발급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⁶⁹⁾

69) 中村裕一은 남편·아들로 인하여 그 모·처에게 음호를 수여할 때 주수고신을 발급 하도록 규정한 예종 경운 4년 6월의 칙서 규정에 배치되는 사례인 「唐肅宗寶應元年(762)贈蘭陵郡太夫人殷氏告身」을 분석하면서 이 문제를 규명하고자 시도한 바 있다. 즉, 中村裕一은 비록 시기적으로 후대의 사료이지만 『唐會要』 卷81, 階, 憲宗元和 13년(818) 6월 制書, 1773쪽의 “其外命婦封, 內外官母·妻, 各視其夫及子散官品令, 不得約職事官品. 文武官五品階爲縣君, 四品階爲郡君, 三品已上階爲郡夫人, 卽止. 其國夫人須待特恩, 不在敍例. 如至郡夫人, 又有制書賜封, 卽改爲郡夫人, 受新恩履歷而已”라는 기록을 근거로 예종 경운 4년 6월의 칙서 규정은 사실 4품·5품의 음호(즉, 郡君 이하)에만 해당하고 3품 이상의 음호(즉, 郡夫人 이상)는 제수고신이 발급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아울러 남편·아들로 인하여 그

그렇다면 남편·아들로 인하여 수여되는 읍호고신 이외에 다른 읍호고신의 발급 절차는 어떠한지? 이 역시 명확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지만, 최소한 「唐高宗咸亨3年(672)歸順縣主告身」을 비롯하여 「唐太宗貞觀15年(641)臨川郡公主告身」, 「唐高宗永徽元年(650)臨川郡長公主告身」 등을 통해 그 실례가 확인된 종실녀의 읍호고신은 그 읍호의 품급에 상응하는 조수고신(제수고신)이 발급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⁷⁰⁾

모·처에게 수여된 읍호는 기본적으로 남편·아들의 관작에 부수된 특전이기 때문에 남편·아들의 고신보다 한 등급 낮은 읍호고신을 발급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하면서 3품 이상의 읍호(즉, 郡夫人 이상)는 제수고신, 4품·5품의 읍호(즉, 郡君 이하)는 조수고신을 발급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中村裕一, 「寶應元年(七六二)顏允南母·殷氏贈邑號告身」, 239~240쪽). 이는 현존 자료들의 정합적인 이해를 시도한 것이지만 그 근거가 반드시 명확하다고는 할 수 없는데, 남편·아들로 인하여 그 모·처에게 수여되는 읍호는 기본적으로 남편·아들의 5품 이상 품급에 상당하였다는 측면에서 제수고신(조수고신)을 발급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 한다. 그렇다면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 예종 경운 4년 6월의 칙서 규정에 대한 이해인데, 이 규정에서 남편·아들로 인하여 그 모·처에게 읍호를 수여해야 할 경우 남편·아들의 ‘本司’ 혹은 ‘本貫’에서의 ‘進牒’을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 규정의 취지는 개별 대상자들이 읍호고신의 발급을 신청하면 이를 담당관사인 이부주작사에서 취합하여 주초를 통해 읍호고신(조수)을 발급하라는 것이 아니었을까? 특히, 이 규정이 적용된 유일한 실례인 「唐肅宗上元2年(761)容城縣太君和氏告身」을 제외하면 「唐肅宗寶應元年(762)贈蘭陵郡太夫人殷氏告身」은 물론 「封姚崇妻鄭國夫人制」, 「封牛仙客妻王氏幽國夫人制」 및 「進封賀蘭琬母楊氏弘農郡夫人制」 등에서 제서로 읍호를 수여하는 대상자가 모두 1인뿐이었다는 사실은 예종 경운 4년 6월의 칙서 규정이 다수의 대상자에게 읍호를 수여할 경우 담당관사가 개별 신청을 취합한 후 주초를 통해 읍호고신(조수)을 발급하라는 것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다만, 이 역시 「唐肅宗上元2年(761)容城縣太君和氏告身」의 상단부가 결락되어 있어 이 고신의 발급 근거인 주초에서 다수의 대상자에게 읍호를 수여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측면에서 하나의 추정에 불과한데, 이에 대해서는 추후의 연구를 기다린다.

70) 이외에도 외명부 읍호의 수여 대상 가운데 (4) 남편·아들로 인하지 않고 별도로 읍호를 수여하는 경우의 사례로 제시한 平州刺史 鄒保英의 처 誠節夫人 奚氏에 대해서는 『舊唐書』 卷193, 列女·鄒保英妻奚氏傳, 5146쪽에 “賊退, 所司以聞, 優制封爲誠節夫人”이라 하고, 『新唐書』 卷205, 列女·楊烈婦傳, 5826쪽에는 “詔封誠

IV. 맺음말

이 글에서는 최근 새롭게 확인된 당대 고신 자료의 하나로서 중국 陝西省 西安市 陝西漢唐石刻博物館이 소장하고 있는 「唐高宗咸亨3年(672)歸順縣主告身」을 소개하고 관련 내용의 기초적 검토를 진행하였다.

최근 잇달아 소개되고 있는 여타의 부장용 석각 고신들과 마찬가지로 귀순현주의 무덤에서 출토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귀순현주고신」은 고종 함형 3년(672) 8월 23일 태종의 제10자 기왕 이신의 제6녀에게 ‘귀순현주(식읍1천호)’라는 외명부 읍호를 수여하는 읍호고신이다. 읍호란 특정 지명을 취하여 외명부 5품 이상의 여성에게 수여된 일종의 여성 봉작을 가리키는데, 현주의 읍호는 원칙적으로 친왕의 딸에게 수여된 읍호였다. 외명부 읍호는 크게 첫째 황제의 혈육인 종실녀, 둘째 왕·국공의 봉작자, 산관·직사관 5품 이상 및 봉작을 가진 훈관 4품 이상 내외관의 모·처, 셋째 내명부 4품 이상의 모, 넷째 남편·아들로 인하지 않고 별도의 사유로 여성 개인에게 수여된 읍호로 구분되었는데, 「귀순현주고신」은 기존의 「唐太宗貞觀15年(641)臨川郡公主告身」, 「唐高宗永徽元年(650)臨川郡長公主告身」 외 또 다른 종실녀의 읍호고신 사례에 해당한다. 이러한 읍호고신의 발급절차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데, 특히 유일하게 관련 규정이 일부 확인되는 내외관의 모·처에게 수여된 읍호고신의 경우에도 주수고신을 발급하도록 규정한 예종 경운 4년 6월의 칙서에 배치되는 실례가 확인된 상황이어서 아직 논의의 여지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 글에서 소개한 「귀순현주고신」은 기존의 「임천군공주고신」, 「임천군장공주고신」과 더불어 적어도 종실녀의 읍호고신이 그 읍호의 품

節夫人”이라 하여 조수고신(제수고신)을 발급한 사례가 확인된다.

급에 상응하는 조수고신(제수고신)이 발급되었음을 증명한다는 측면에서 일정한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2024.07.12. 투고 / 2024.08.12. 심사완료 / 2024.08.19. 게재확정)

[Abstract]

An Analysis of ‘the Appointment Decree of Princess of Guishun’(歸順縣主告身)

Jo, Jaewoo

In 2021, a new appointment decree(告身) in T'ang Dynasty periods, which was carved in stone, was reported to the academia. This is ‘the appointment decree of Princess of Guishun(歸順縣主)’, owned by the Shaanxi Han Tang Stone Sculpture Museum located in Xian, Shaanxi. Although the detailed location is unknown, it is presumed that ‘the appointment decree of Princess of Guishun’ was excavated from her tomb. This appointment decree has valuable historical value in that it is the appointment decree that granted woman’s noble title(邑號) during the Tang Dynasty. This paper introduced ‘the appointment decree of Princess of Guishun’ and conducted a basic review of related contents.

□ Keyword

‘Appointment Decree(告身), Women’s noble title(邑號), Appointment Decree for women’s noble title(邑號告身), ‘Princess of Guishun(歸順縣主), Document Administration

[참고문헌]

1. 사료 및 자료집

- (後晉) 劉昫 等撰, 『舊唐書』, 北京: 中華書局, 1975.
- (宋) 歐陽修·宋祁 撰, 『新唐書』, 北京: 中華書局, 1975.
- (宋) 司馬光 編著, (元) 胡三省 音註, 『資治通鑑』, 北京: 中華書局, 1956.
- (唐) 長孫無忌 等撰, 『唐律疏議』(劉俊文 點校), 北京: 中華書局, 1983.
- (唐) 李林甫 等撰, 『唐六典』(陳仲夫 點校), 北京: 中華書局, 1992.
- (唐) 杜佑 撰, 『通典』(王文錦·劉俊文 等點校), 北京: 中華書局, 1988.
- (宋) 王溥 撰, 『唐會要』,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1.
- (唐) 劉肅 撰, 『大唐新語』(許德楠·李鼎霞 點校), 北京: 中華書局, 1997.
- (宋) 宋敏求 編, 『唐大詔令集』, 北京: 商務印書館, 1959.
- (宋) 李昉 等編, 『文苑英華』, 北京: 中華書局, 1966.
- (清) 董誥 等編, 『全唐文』, 北京: 中華書局, 1983.
- (宋) 留元剛 編, 『忠義堂帖』(中國法帖全集編集委員會 編, 『中國法帖全集』9, 武漢: 湖北美術出版社, 2002).

충북대학교박물관, 『中國石刻拓本展 - 語石千秋』, 청주: 충북대학교박물관, 2023.

周紹良 主編, 『唐代墓誌彙編』上·下,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2. (약칭: 『彙編』)

周紹良·趙超 主編, 『唐代墓誌彙編續集』,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1. (약칭: 『續集』)

趙力光 主編, 『西安碑林博物館新藏墓誌續編』上, 西安: 陝西師範大學出版總社有限公司, 2014. (약칭: 『碑林續編』)

秦航 主編, 『陝西漢唐石刻博物館』, 北京: 文物出版社, 2021.

氣賀澤保規 編, 『新編 唐代墓誌所在総合目録』, 東京: 明治大學東アジア石刻文物研究所, 2017.

2. 저서

嚴耕望, 『唐僕尙丞郎表』上,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7.

岑仲勉, 『金石論叢』,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1.

仁井田陞, 『唐令拾遺』,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33.

池田溫, 『唐令拾遺補』,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97.

3. 논문

김호, 「唐代 皇室女性の生活과 地位」, 『동양사학연구』 97, 2006.

조재우, 「당대 군공규정과 수훈절차 — ‘勳告’와 ‘軍功公驗’을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 152, 2020.

최진열, 「唐代 여성 爵號(邑號)의 性格 — 邑號와 본적지·郡望의 관계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63, 2008.

丁斯明, 「《新唐書·宗室世系表》集校」, 蘭州大學 碩士學位論文, 2023.

馬俊杰, 「唐代告身研究綜述 — 兼論“告身”淵源」, 『古代法律碑刻研究』 1, 北京: 中國政法大學出版社, 2019.

陝西省文管會·昭陵文管所, 「唐臨川公主墓出土的墓志和詔書」, 『文物』 1977-10.

徐暢, 「存世唐代告身及其相關研究述略」, 『中國史研究動態』 2012-3.

趙振華, 「談武周授封武承嗣的詔書和冊書 — 以新見石刻文書爲中心」,

- 『湖南科技學院學報』2013-2.
- _____, 「談武周苑嘉賓墓志與告身 — 以新見石刻材料爲中心」, 『唐史論叢』17, 2014.
- _____. 王迪, 「讀貞觀十八年《滕王李元嬰金州刺史詔》」, 『故宮學刊』2, 2016.
- _____, 「記唐代苑大智將軍的告身與墓志(上)」, 『洛陽考古』2018-2.
- _____, 「記唐代苑大智將軍的告身與墓志(下)」, 『洛陽考古』2018-3.
- _____, 「記唐代外戚韋洽墓誌與贈官詔葬制書」, 『洛陽考古』2019-1.
- 趙晶, 「論日本中國古文書研究之演進 — 以唐代告身研究爲例」, 『早期中國史研究』6-1, 2014.
- 張國剛, 「唐代階官與職事官的階官化」, 『唐代政治制度研究論集』, 臺北: 文津出版社, 1995.
- 黃約瑟, 「試論垂拱四年李唐宗室反武之役」, 『黃約瑟隋唐史論集』, 北京: 中華書局, 1997.
- 內藤乾吉, 「唐の三省」, 『中國法制史考証』, 東京: 有斐閣, 1963(原刊: 『史林』15-4, 1930).
- _____, 「敦煌出土の唐騎都尉秦元告身」, 『中國法制史考証』, 東京: 有斐閣, 1963(原刊: 『東方學報』3, 1933).
- 中村裕一, 「寶應元年(七六二)顏允南母·殷氏贈邑號告身」, 『唐代官文書研究』, 京都: 中文出版社, 1991.
- 大庭脩, 「唐告身の古文書學的研究」, 『唐告身と日本古代の位階制』, 伊勢: 皇學館出版部, 2003(原刊: 西域文化研究會 編, 『西域文化研究』3, 京都: 法藏館, 1960).

